

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5~43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	2005. 8.
제 출 자	거창군수

■ 개정이유

- 인터넷 전자입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사입찰업무처리에 대한 비용이 발생되지 아니하므로 입찰참가신청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.

■ 주요골자

- [별표1] 구분·기준·요액 및 비고란 중 6.입찰참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(안 별표1).

■ 개정근거

- 『지방자치법』 제15조, 제128조 및 제130조
- 경상남도 세정과-5556 【공사입찰참가수수료 징수제도 개선 재권고(2004.07.19)】

거창군 조례 제 호
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1] 구분·기준·요액 및 비고란 중 “6. 입찰참가에 관한 사항”을 삭제한다.

[별표 1]

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

(단위:원)

구분	기준	요액	비고
6.입찰참가에 관한 사항			
(1) 입찰참가신청	1건당	10,000	
(2) 수의계약자(1,000만원이상)	1건당	10,000	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별표 1]

제증명 등 수수료 요율표

(단위:원)

현행				개정안			
구분	기준	요액	비고	구분	기준	요액	비고
6.입찰참가에 관한 사항				〈삭제〉			
(1) 입찰참가신청	1 건당	10,000		〈삭제〉			
(2) 수의계약자 (1,000만원이상)	1 건당	10,000		〈삭제〉			